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환자기록 열람〉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1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9.

(3) 회 부 일 : 2026. 1.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 본인 외에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7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

현행	개정안
<신설> 10. ~ 19. (생략) ④·⑤ (생략)	<u>정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u> 9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10. ~ 19.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¹⁾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각 호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도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 >

환자 가족	· 환자의 가족 등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증명서만 첨부)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급여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된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 관련 요청의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관련 요청의 경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법원 등	·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106조), 검사의 압수·수색·검증(215조) 등 ·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압수(146조), 군검사의 압수·수색·검증(254조) 등 ·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보험 및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내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조사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등	·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에 관련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와 관련된 경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등에 관한 경우

□ 이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체계는 2009. 1. 30. 「법률 제93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종전에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도 열람 등이 가능했던 규정을 현행과 같이 열거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의료법의 규율 하에서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한 것임.²⁾

□ 한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3항³⁾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⁴⁾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이에 대한 심사는 동법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해당 보험사 및 공제기관(이하 ‘보험회사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허위·과잉진료 등 보험금누수 방지 및 진료비 분쟁 예방을 위한 취지에서⁵⁾ 2013년 7월부터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

2) 법제처는 “다른 법령에 진료기록 등의 요청 근거가 있더라도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이 달라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2015.7.28. 법제처 법령해석 15-0373 참조).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생략)

5) 2011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2268)」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회사별로 소속된 직원이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료비 분쟁도 심화되는 등 공정한 진료비 심사체계가 미흡하여 허위, 과잉진료가 만연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심사인력을 갖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시 법 개정취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이에 앞서 정부는 허위·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만성화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⁶⁾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현행 근거법령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절차를 보면, ①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② 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가 동법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수가를 결정하여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③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함.⁷⁾

④ 만약,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⁸⁾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⑤ 해당 기간 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음.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 6. 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의 청구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⁹⁾

- 이 과정에서 동법 제14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뿐만 아니라, 동법 제12조의2¹⁰⁾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3. 8. 6.>
 -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삭제 <2013. 8. 6.>
 - ⑤ 삭제 <2013. 8. 6.>
 -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 ③ 삭제 <2015. 6. 22.>
 -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 ⑦ (생략)
 -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¹²⁾

□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제9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심사평가원) 및 분쟁의 심사·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3자 진료기록 열람 등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료현장에서 심사평가원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기록 요청 시 법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¹³⁾

□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 요청 역시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요청과 같이 의료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심의회에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3)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부터 진료기록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례는 없음.

□ 다만,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의2¹⁴⁾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예외사유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등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에 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및 제22조는 「의료법」 제21조 규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의료법」에 별도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음.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및 제22조가 「의료법」 제 21조의 특별규정이라는 유권해석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 편람’에 반영할 예정임.

2)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환자 의무기록은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사유가 법률상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환자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자료제공 관련 행정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등 고도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경우, 열람범위 확대는 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환자 기록 공개 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전문심사 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하여 해당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